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559 발의연월일: 2024. 12. 17.

발 의 자: 박성훈·김성원·이달희

이헌승 · 김종양 · 이인선

고동진 • 한지아 • 박충권

임이자 · 김도읍 의원

(11인)

제안이유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는 2008년부터 자율등록방식으로 도입·운 영되어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우리나라 수산물 수입액은 지속 증가하고 있고,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고 유통시키는 불법행위도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이력추적관리 정보 공개에 대한 근거 규정이 부재하여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산물유통이력의 효율적인 추적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 관에게 관련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요청권을 신설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생산부터 판매까지 각 유통단계 별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수산물 유통시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며, 수산물 생산자의 신뢰 확보로 경영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소비자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수산물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자가 기록·관리하는 이력정보의 공개를 법률에 명시하고, 현장에서 휴대전화기로 관련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4항).
- 나. 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가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수자에게 수입유통이력 신고의무가 있음을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3항 및 제63조제2항제5호 신설).
- 다.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제34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소비자 등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령"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사항은"을 "사항과 제4항에 따라 공개하는 정보의항목, 공개기간, 공개방법, 그 밖에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

이 경우 휴대전화기를 이용하는 등 소비자가 이력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제1항 중 "거래하는 자는 국민보건을"을 "거래하는 자(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국민보건 또는 공정거래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유통이력수입수산물별 신고 절차"를 "유통이력수입수산물별 지정의 유효기간 및 연장, 신고절차"로, "해양수산부장관"을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③ 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가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수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수입유통이력 신고의무가

있음을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려야 한다.

제4장에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자료의 요청)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7조에 따른 수산물 이력 추적관리 및 제31조에 따른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한다.

제63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입유통이력 신고의무가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27조(수산물 이력추적관리) ① 제27조(수산물 이력추적관리) ①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의 등록을 한 자는 해당 수산 물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 소비자 등이 쉽게 확인할 바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표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령----시를 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 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는 해당 수산물에 이력추적 관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이 경우 휴대전화기를 이용하 는 등 소비자가 이력정보에 쉽 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 ⑥ (생략) (5)· (6) (현행과 같음) ⑦ 그 밖에 이력추적관리의 대 상품목, 등록절차, 등록사항,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해 ----사항과 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항에 따라 공개하는 정보의 항목, 공개기간, 공개방법, 그 밖 에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제31조(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 제31조(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 리) ① 외국 수산물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수산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물(이하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이라 한다)에 대한유통단계별 거래명세(이하 "수입유통이력"이라 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생략)

<신 설>

<u>③</u>·<u>④</u> (생 략)

⑤ 그 밖에 <u>유통이력수입수산</u> 물별 신고 절차, 수입유통이력 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리) ①
거래하는 자(소비자에 대
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국민보
건 또는 공정거래를
② (현행과 같음)
③ 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가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을 양도하
는 경우에는 이를 양수하는 자
에게 제1항에 따른 수입유통이
력 신고의무가 있음을 해양수
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려야 한다.
<u>④</u> ・ <u>⑤</u> (현행 제3항 및 제4항
과 같음)
⑥유통이럭수입수산
물별 지정의 유효기간 및 연장,
신고절차
<u>대</u>
통령령

<신 설>

제63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 략) <신 설>

③ (생략)

제34조의2(자료의 요청) 해양수산 부장관은 제27조에 따른 수산 물 이력추적관리 및 제31조에 따른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 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 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 야 한다.

제6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2) -----
- _____

---.

- 1. ~ 4. (현행과 같음)
- 5.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입유통이력 신고의무가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자
- ③ (현행과 같음)